

『외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9. 5. 29.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외화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약관은 외화예금 자동대체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는 (주)하나은행 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이라 합니다)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</p> <p>제 2 조 (서비스 종류)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 1. 자동이체 서비스 2. 외화정기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</p> <p>제 3 조 (자동이체서비스) ① 은행은 이용자의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(팩스에 의한 신청 포함. 이하 같다)에 따라 이체지정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 의뢰금액을 이체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대금을 결제합니다.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 대상거래만을 지정하고 이체 지정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체합니다 ③ 은행은 자동이체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은행에 기록된 서명 또는 인감과 외견상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삭제) ④ (생략) ⑤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. 1~3. (생략) 4. 출금계좌에 법적인 지급 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가 부적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때 (신설) ⑥ ~ ⑦ (생략)</p> <p>제 4 조 (외화정기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) ① 은행은 비거주자인 이용자의 해외송금 자동대체서비스 신청에 따라 고객이 가입한 외화정기예금이 만기가 된 경우 만기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원리금을 해외로 자동 송금합니다. ② 은행은 해외은행명, 은행주소, 입금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등으로 자동대체하여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외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</p> <p>제 1 조 (목적) 이 약관은 외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는 (주)하나은행 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이라 합니다)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<u>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 2 조 (서비스 종류)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 1. 자동이체 서비스 2. <u>국내</u>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</p> <p>제 3 조 (자동이체서비스) ① 은행은 이용자의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(팩스 또는 e-mail에 의한 신청 포함. 이하 같다)에 따라 이체지정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<u>이용자가 지정한</u> 출금계좌에서 이체 의뢰금액을 <u>출금하여</u> 이체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대금을 결제합니다.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 대상거래만을 지정하고 이체 지정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그 <u>이체</u>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체합니다 <u>(삭제)</u> ③ (항 체상) ④ 은행은 다음 각호의 <u>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. 1~3. (좌동) 4. 출금계좌에 법적인 지급 제한이 <u>등록되었거나, 자금세탁 또는 범죄와 연루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</u> <u>5.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u> ⑤ ~ ⑥ (항 체상)</p> <p>제 4 조 (<u>국내</u>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) ① 은행은 비거주자인 이용자의 해외송금 자동대체서비스 신청에 따라 고객이 가입한 <u>외화 저축성 예금 및/또는 비거주자 자유원 저축성 예금</u>이 만기가 된 경우 <u>당해</u> 만기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<u>해당 예금의</u> 원리금을 해외로 자동 송금합니다. ② 은행은 해외은행명, 은행주소, 입금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자동대체 <u>처리</u>하여 <u>해외로</u>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<u>을 은행은</u>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약관명 수정 (원화계좌 포함 내용 명확화)</p> <p>약관명 수정내용 반영</p> <p>의미 명확화</p> <p>원화(비거주자 자유원계정) 포함 내용 반영</p> <p>처리신청 채널 e-mail 반영</p> <p>의미 명확화</p> <p>의미 명확화</p> <p>제5조 신설로 내용 삭제</p> <p>항 체상 항 체상, 문구 수정</p> <p>서비스 제한 사유 명확화</p> <p>제 5조 삭제로 서비스 제한 내용 반영 항 체상</p> <p>서비스 종류 반영</p> <p>예금 종류 명확화</p> <p>의미 명확화</p> <p>중복 용어 삭제</p>

<p>(신설)</p> <p>제 5 조 (면책) 은행은 천재지변, 정전, 팩스,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지연, 불능, 기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 <u>(삭제)</u></p>	<p><u>③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	<p>제 5조 삭제로 서비스 제한 내용 반영</p> <p>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사항 반영</p>
<p>(신설)</p> 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은행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	<p><u>제 5 조 (서비스 처리방법)</u> <u>① 은행은 이용자의 개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기 등록된 서명 또는 인감과 일치 여부 및 유선으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ARS 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합니다.</u> <u>② 법인인 이용자가 제 1 항의 ARS 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는 약정서에 그러한 뜻을 기재하고, 법인의 책임하에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6 조 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<u>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</u>를 따르기로 하며 <u>이에 대한</u>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	<p>ARS 비밀번호 인증절차 신설 내용 반영</p> <p>이용수수료 명확화</p>
<p>제 7 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·해지)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신청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·해지함으로써 서비스는 변경 또는 해지됩니다. ② 은행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7 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·해지)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<u>이용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등록지점이 변경·해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는 변경 또는 해지됩니다.</u> ② 은행은 <u>이용자가 약정일(또는 최종거래일)로부터 1년이상 장기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사전 서면 및 유선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</u>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능 지점 명확화</p> <p>해지조건 및 기간 명확화</p>
<p>제 8 조 (생략)</p>	<p>제 8 조 (좌동)</p>	
<p>제 9 조 (생략)</p>	<p>제 9 조 (좌동)</p>	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미적용